환경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8.(목) 12:00	배포 일시	2022. 12. 6.(화)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770)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 '급성, 만성, 생태'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 등 1,093종이 있음(2022.11.30. 기준)

□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연평균 유독물 신규지정 약 3배 증가(연 16→ 50종): '14년 722종 → '21년 1,082종

○ 그간 산업계는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염산 등)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납 등)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었다.

* 벤젠(0.1% 이상 혼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2.5% 이상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벤젠 0.7%) 및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5%)도 유독

물질에 해당하여 국민들이 해당물질을 사용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됨

□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차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해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총 12차례의 설명회,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22.3. ~ 8월, 인하대)

※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토론내용 등은 누리집(www.chemnavi.or.kr/forum)에 공개

○ 이를 통해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 및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했다.

* 「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의 원칙에 따라 마련했으며,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한다.

○ 둘째,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 피해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하여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의 최소화(방류벽, 집수시설, 바닥 방수 등)에 집중하여 관리한다.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서 '화관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하여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사고 발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하며, 현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부여됨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유해·위험성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UN GHS)에서 정한 유해·위험성별 안전문구를 준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 급성유해성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피부 부식성 물질의 경우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던 것을 구분 1B 및 1C까지 확대하고,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도 지정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시 사업장 주변 환경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급 중 배출관리 방안과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독물질 지정기준, 취급시설기준, 취급기준 및 영업신고 요건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및 전문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770)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담당자	공업전문관 최재석 (044-201-68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요약

□ [기본방향] 유해성, 취급량 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개편

○ (지정체계) 유해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물질 구별 지정

○ (관리체계) 화학사고 예방·대응, 인체 및 환경노출 등 고려 체계 개편

< 현행 > < 개편 방향 >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노출 즉시 인체 피해 ↓ 사고 예방·대응 중심 ※ 취급량,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 필요	저농도·소량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 피해 ↓ 인체노출 저감 중심 ※ 주민·소비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추진	水系 유입시 수생생물 피해 ↓ 환경(수질·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 사고시 水系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

□ 지정기준(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편방향

<유독물질 지정기준의 세분화 및 조정(안)>

현행 지정기준		→	개정 지정기준(안)	
유독물질	가~다.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구분1~3), 라. 피부부식성(구분1A), 마. 수생환경유해성 급성(구분1) 바. 수생환경유해성 만성(구분1) 사. 반복노출독성(구분1), 아. 변이원성(구분1) 자. 발암성(구분1) 차. 생식독성(구분1)		급성 유해성 (가~라)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구분1~3) 피부부식성(구분1A·B·C),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구분1)),
			만성 유해성 (사~차)	반복노출독성(구분1), 변이원성·발암성·생식독성(구분1)
			생태 유해성 (마, 바)	수생환경유해성 급성·만성(구분1)

□ 관리체계 개편방향(화학물질관리법령)

< 유해성 및 취급량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방향 >

화관법에 따른 관리형태(수단)	적용대상·수준 차등화 방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성·취급량 고려	既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 판매자 관리	유해성·취급량 및 시설 유무 고려	→ 차등화法개정 필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및 시설검사	유해성·취급량 고려	→ 차등화法개정 필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등	유해성 고려	→ 차등화法개정 필요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등 유통관리 및 화학사고 즉시신고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필요	→ 현행 유지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급성유해성 : 단기간 노출로도 인체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및 피부부식성 등의 유해성

○ 만성유해성 :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반복노출독성 등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유해성

○ 생태유해성 : 수생생물(어류, 물벼룩, 조류 등)에 영향을 주는 유해성으로 급성·만성을 포함

○ 피부 부식성 : 피부조직을 파괴하여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

(구분 1A) 3분 이하 노출 후 1시간 내에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 1B) 3분 초과 1시간 이하 노출 후 14일 이내에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 1C)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 노출 후 14일 이내에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해 신경계, 호흡기계, 조혈계, 심장 등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UN GHS기준의 구분1~구분3 해당)
✓ 피부 부식성/자극성(UN GHS기준의 구분1A에 해당)
✓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만성독성(UN GHS기준의 구분1에 해당)
✓ 반복노출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각각 UN GHS기준의 구분1에 해당)